

한국부식학회 울산·울주지부 규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

본 지부는 한국부식학회 울산·울주지부(이하 본 지부라 칭함)라 부른다.

제 2 조

본지부는 부식과 방식학에 관한 제반학술 및 기술의 발전, 보급, 정보교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

본지부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1) 연구발표회, 학술강연회 및 강연회 개최
- 2) 방식기술의 향상 및 부식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조
- 3) 연구의 장려 및 편의 도모
- 4) 학술 및 기술자료의 배포
- 5) 기타 본지부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 4 조

본지부의 사무실은 울산대학교 금속 및 재료공학과에 둔다.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

본지부 회원은 울산·울주 지부에 거주(근무)하는 한국부식학회회원(정회원, 종신회원) 및 지부 특별회원으로 한다.

제 6 조

본지부 회원규정은 한국부식학회 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고 지부특별회원은 본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지부에 가입한 사람 및 법인으로 한다.

제 7 조

본지부의 회원 및 특별회원은 한국부식학회 규칙 제5 조의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.

제 3 장 임 원

제 8 조

본지부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- 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) 지부장 | 1명 |
| 2) 부지부장 | 1명 |
| 3) 지부이사 | 약간명(총무 1명, 간사 1명, 기타 약간명) |
| 4) 지부감사 | 1명 |

제 9 조

지부임원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은 지부의 추천을 거쳐 본회 회장이 임명한다

제 10 조

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고 임원이 결손될 때는 지부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결정한다.

제 11 조

지부장은 본지부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 12 조

지부이사는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소관업무를 관장 협의한다. 지부장이 유고시는 부지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3 조

지부감사는 회무를 감사한다.

제 14 조

지부장은 지부회원 중 지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지부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5 조

회의는 지부총회와 임원회의로 나눈다.

제 16 조

지부총회는 지부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

임시총회로 나눈다.

정기총회는 매년 9월에 지부장이 소집한다.

단,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임시총회는 정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.

제17조

지부 정기총회에서는 :

- 1) 전년도 사업보고
- 2) 전년도 수지결산보고
- 3)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
- 4) 기타 본지부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의결한다.

제18조

지부임원회는 지부장, 부지부장, 이사, 감사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전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지부장이 이를 소집하며, 본지부의 주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.

제19조

각 회의의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.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5장 자산 및 회계

제20조

본지부의 자산은 다음의 각 항목으로 한다.

- 1) 본회의 경비 보조
- 2) 찬조금품
- 3) 기타의 수입

제21조

자산의 관리방법은 임원회에서 정하고 지부장이 관리한다.

제22조

본지부의 회계년도는 본회의 회계년도를 따른다.

부 칙

제23조

본지부 규칙의 개정은 지부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24조

본지부 규칙에서 미비된 사항은 한국부식학회 정관 및 규칙에 따른다.

제25조

본지부 규칙은 1987년 5월 일로 부터 빌효한다.